

#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개요

###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66억 5천8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95억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789억 9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원임.

###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65억 3천9백만원포함하여 3,011억 8천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2,674억 4백만원이며, 232억 5천6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5억 2천만원임.

## 다. 예비비

- 해당없음.

## 라. 기금

-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65억 7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87억 1천만원을 조성하고 58억 9천3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93억 9천4백만원임.

# 3. 결산세부내역

##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66억 5천8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95억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789억 9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원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76,658,149	89,499,684	78,999,434	10,500,250	88.3 %
세외수입	54,010,926	63,187,338	52,687,088	10,500,250	83.4 %
보조금	22,647,223	26,031,576	26,031,576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80,770	280,770	-	100.0 %

- 예산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40억 1천1백만원에 대하여 631억 8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83.4%인 526억 8천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예산현액 226억 4천7백만원에 대하여 260억 3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2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음.

## 나. 세출결산

###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65억 3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3,011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674억 4백만원이며, 232억 5천6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5억 2천만원임.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46,538,863	301,179,750	267,404,200	23,255,634	10,519,916	88.7%
일반회계	18,273,690	214,229,309	186,690,514	17,628,992	9,909,803	87.1%
도시개발특별회계	28,265,173	86,950,441	80,713,686	5,626,642	610,113	92.8%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금 182억 7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42억 2천9백만원 중 1,866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176억 2천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82억 6천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9억 5천만원 중 807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56억 2천7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2)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42억 2천9백만원 대비 4.6%인 99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9억 5천만원 대비 0.7%인 6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관광체육국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3,011억 8천만원 대비 3.5%인 105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2.4%,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301,179,750	10,519,916 100%	2,642,887 25.1%	-	7,789,389 74.0%	87,640 0.9%
일반회계	214,229,309	9,909,803 100%	2,642,887 26.7%	-	7,179,276 72.4%	87,640 0.9%
특별회계	86,950,441	610,113	-	-	610,113	-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총 4건, 5억 7천6백만원
- 예산이체 : 총 42건, 613억 1천8백만원
- 예산변경사용 : 총 3건, 2억 9천3백만원

<예산전용·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4건	3,259,469	576,000	576,000
예산이체	42건	-	61,317,974	61,317,974
예산변경사용	3건	13,313,889	293,500	293,500

####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일반회계 총 9개 세부사업, 12건, 126억 9천5백만원  
특별회계 총 2개 세부사업, 6건, 53억 2천7백만원
- 사고이월 : 일반회계 총 3개 세부사업, 3건, 49억 3천4백만원  
특별회계 총 1개 세부사업, 2건, 3억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12건	30,247,590	14,067,073	8,403,058	12,694,613	9,149,919
	특별회계	6건	86,950,441	82,743,193	80,713,686	5,326,704	910,051
사고이월	일반회계	3건	20,102,417	9,270,942	4,326,913	4,934,379	10,841,125
	특별회계	2건	80,691,616	78,418,296	76,388,789	299,938	4,002,889

#### 다. 예비비

- 해당없음.

## 라. 기금

-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65억 7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87억 1천만원을 조성하고 58억 9천3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93억 9천4백만원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6,576,202	2,817,397	8,710,262	5,892,865	59,393,599

###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용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9,294,518	7,500,000	584,256	1,210,262	9,176,482	5,890,371	2,494	3,283,617

## 4. 검토의견

### 가.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66억 5천8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89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의 88.3%에 해당하는 789억 9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76,658,149	89,499,684	78,999,434	10,500,250	88.3%
공유재산임대료	21,065,926	20,304,925	19,436,595	868,330	95.7%
입장료수입	5,550,423	1,333,940	1,333,940	-	100%
기타사용료	19,291,405	18,835,796	18,765,770	70,026	99.6%
주차요금수입	5,743,157	6,105,222	6,105,222	-	100%
기타이자수입	69,000	90,167	90,035	132	99.9%
자치단체간부담금	205,000	232,079	232,079	-	100%
변상금및위약금	-	6,531	6,531	-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	375,391	373,455	1,936	99.5%
그외수입	2,012,062	6,052,288	5,989,749	62,539	99%
지난연도수입	73,953	9,851,000	353,713	9,497,287	3.6%
국고보조금	3,213,000	3,213,000	3,213,000	-	1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43,000	7,043,000	7,043,000	-	100%
기금	15,891,223	15,775,576	15,775,576	-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280,770	280,770	-	100%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10,056,776	-	-	-	-	5,071,743	4,985,033

< 세입금 결손처분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사용시설	채납자	세목명	건수	채납금액
합계			156	443,474
동대문운동장	계		155	331,823
	김남갑(지노상사)	임대료, 변상금	6	34,374
	박선귀(정신스포츠)	변상금, 기타잡수입	29	58,966
	양정규(대일상사)	변상금, 기타잡수입	25	62,998
	신왕건(보고보고닷컴)	임대료, 변상금, 기타잡수입	39	28,245
	한상학(블카노상사)	변상금, 기타잡수입	56	147,239
잠실종합운동장	(주)코스모나인(송길용)	임대료	1	111,651

○ 미수납액 105억원 중 동대문운동장 임대료 및 변상금과 잠실종합운동장의 임대료 등 총 156건<sup>1)</sup>의 4억 4천3백만원이 결손처분된 나머지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 94억 9천7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8억 6천8백만원, 기타사용료수입 7천만원, 그 외수입 6천3백만원 등이며,

사유별로는 소송계류및재산압류 50억 7천2백만원과 기타 49억 8천 5백만원임.

1) 1회 독촉 이후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 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2015.1.23. 결손처분됨.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공유재산임대료	○장충체육관입점업체 임대료 및 연체료 1억 6천8백만원 ○(재)서울산업진흥원 2억 9천2백만원 ○국민생활체육회 2억 5천8백만원 등
	기타사용료	○'15.10월징수결정액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및 장충체육관 '15.11월 관리비 체납 7천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4년도 어린이 축구교실, 14년도 여성 축구교실, '1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60만원 ○' 2013 노원구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집행잔액 90만원 등
	그외수입	○가양유수지복합센터건립에따른발생이자미수납 4천 2백만원 ○서울관광사진전 사업비 환수 및 부당이득금 1천6백만원 등
	지난연도수입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위탁료 및 변상금 등 41억 7천8백만원 ○뚝섬승마훈련원 시유재산임대료 1건 26억 1천5백만원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무단점유 등에 따른 변상금 32건 8억 1천6백만원 등
사 유 별	소송계류및재산압류	○부설주차장 수탁운영자 서울남산골프클럽(주)등 변상금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무단점유 등에 따른 변상금 32건 ○기타 사무실 임대업체 등 79건 등
	기타	○장충체육관입점업체 임대료 미수납 ○가양유수지복합센터건립에따른발생이자미수납 ○잠실, 동대문운동장의 공유재산임대료 24건 ○뚝섬승마훈련원 시유재산임대료 등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94억 9천7백만원은 관광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90.5%를 차지하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98억 5천1백만원의 3.6%인 3억 5천4백만원에 불과함.

관광체육국 전체의 지난년도수입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임대료의 경우 2009년부터,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는 2012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로 대부분 임대료 미수납과 그에 대한 변상금 등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난년도수입 증감현황 (전년대비 증감액)〉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최초부과연도	2013	2014	2015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2009년	3,889	3,889(-)	4,178(289)
	539			
뚝섬승마훈련원	2012년	2,358(214)	2,358(-)	2,615(257)
	2,144			
동대문운동장	2010년	1,143	1,143(-)	816(△327)
	44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임대료 미수납액은 2008년 4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이 2009년 6월 이후 미납한 위탁료와 무단 점유한 2010년 6월 이후의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체납 가산금이 더해져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41억 7천8백만원에 이릅니다.

2009년 10월 18일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임대료 체납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이 처분과 무단점유에 대한 각종 행정·민·형사상 소송결과 2014년 4월 30일 1심, 2015년 3월 19일 2심 선고결과 모두 서울시가 일부승소(92%)했으며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2015년 4월 3일 손해배상 소송 또한 확정되었으나, 서울남산골프클럽(주) 법인은 2011년 10월 31일 폐업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5년 8월 세 차례, 10월 두 차례 가족들의 재산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체납한 경우여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나 민법 제165조2)의해 10년간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미수납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관련 소송 경과 붙임1.).

2) 제165조(소멸시효의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 07-306, 2007.10.0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 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 **독점승마훈련원 사용료**는 2011년 12월 30일 서울시가 (사)서울시승마협회에 지난 5년간('07.1.1. ~ '11.12.31.)의 사용료 21억 9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2012년 5월 30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승마협회가 2012년 6월 7일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년 3월 28일 1심, 2014년 1월 17일 2심을 거쳐 2015년 1월 14일 서울시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금 3억 2천2백만원만 회수했을 뿐이며, 나머지 사용료 미수납액은 26억 1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승마협회가 2014년 11월 30일 해산함에 따라 나머지 사용료인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당장의 결손처분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세무과를 통해 방안을 살펴 본 뒤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관련 소송 경과 붙임2.).

-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DDP 건립 이전 동대문운동장 상인들 중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후 무단점유와 명도소송에 따라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부과된 변상금 체납액(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8억 1천6백만원)으로

총 245건의 미수납액 11억 4천3백만원 중 155건의 3억 3천2백만원이 결손처분(2015.1.23.)되고 남은 90건 중 2004년부터 체납이 있었던 양영선(임스포츠)이 2회('16.3.31, '16.5.12)에 걸쳐 250만원을 납부한 건 외에는 징수실적이 없었으며,

채납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소재지불명, 사망 등으로 채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2006년 7월 4일부터 미수납 되었던 송형달(화인상사)의 2백만원이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sup>3)</sup>이 완성되어 2016년 6월경 결손처분을 앞두고 있음.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용시설	채납자	세목명	건수	채납금액	비고
과거 동대문 운동장 상인	강용(SD비지니스)	임대료, 기타잡수입	13	47,048	파산면책
	소순풍(반도스포츠)	변상금, 기타잡수입	22	40,439	개인회생 면책
	손형달(화인상사)	기타잡수입	18	2,124	당사자 사망 (결손처분 예정)
	양영선(임스포츠)	변상금, 기타잡수입	18	48,120	'16년 5.12현재 250만원 징수
	이순자(희영스포츠)	임대료, 변상금	19	678,818	'16년 3월 5개 주거래 은행 잔지압류 시행
계			90	816,549	

3)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6년 시효결손 처분대상 (2016.5.9.후 기준)〉

(단위 : 원)

연번	채납자	물건지	건수	채납액 (부가세포함)	시효소멸일자	비고
1	대길특수엔지니어링	-	1	1,475,040	2013.8.28	개인
2	문세석(비즈스폰)	체육공원 내 휴게음식점	5	75,143,150	2015.9.28	
3	김봉조 (서울특별시수영연맹)	제1수영장	2	2,136,770	2012.1.20	
4	손형달(화인상사)	동대문운동장	18	2,124,350	2013.4.30	
5	창협레포츠 (박명주)	제1수영장 1층	34	88,167,300	2016.4.30	법인
6	에쓰엠지코리아	주경기장 1-16문 데크밑	5	195,830	2014.8.31	
7	산해숙 (사물레이션골프코리아)	주경기장	1	3,700	2015.4.30	개인
8	김두만(신한국프 로레슬링협회)	실내체육관 데크 밑	28	77,146,790	2015.12.31	
9	곽병철 (스포라인코리아)	제1수영장 1층	77	146,166,110	2016.4.30	
합 계			171	392,559,04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2016년 시효결손 처분대상을 계획한 바에 따르면 총 171건으로 3억 9천3백만원이 2016년 6월 중 결손처분을 앞두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결손처분액 4억 4천3백만원은 비록 서울시 전체 결손처분액(1,391억 6천4백만원)의 0.32%를 차지하나, 매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 뚜렷한 징수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는 2010년부터 세외수입을 담당했던 직원의 근무기간을 살

펴본 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근 3년간 특별 채용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년 미만의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직원이 없고 정확히 기존의 자료가 누적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외수입 담당자〉

성 명	근무기간
이○○ (녹지)	2010. 09.16 ~ 2011. 7. 31
공○○ (조무)	2011. 03. 09 ~ 2011. 7. 31
노○○ (시간선택임기제)	2011. 8. 1 ~ 2014. 3. 5
장○○ (시간선택임기제)	2011. 8. 1 ~ 2014. 12. 31
정○○ (행정)	2015. 1. 23 ~ 2015. 7. 12.
이○○ (행정)	2015. 7. 13 ~ 현재

이와 같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미수납액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 무단점유 및 소송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사용료를 징수·납부하고,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전 또는 법 시행 초기에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02회계연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받은 바<sup>4)</sup>와 같이 법 시행이

4) 제24회 정례회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p15 2002회계연도 문화국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세입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도 사용한 기획사가 해체되어 회수가 불투명하고, 전년도 발생한 임대미수납액도 채권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향후 미수납액 방지와 처리를 위하여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예납근거 절차 및 금액 등 강제규정 근거를 명시하거나 사용 계약시 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하고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수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전부터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미수납액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3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미수납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계	10,500	4.6%	9,193	△ 3.6%	8,76	-
경상적	938	1.8%	24	△ 0.6%	290	-
임시적	9,562	4.17%	9,169	2.0%	8,473	-

더불어 최근3년 관광체육국의 미수납액을 살펴본 바, 2014년 대비 4.6%p 증가되는 추세로 그 중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경비인 경상적 미수납이 2014년 대비 1.8%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미수납액 발생규모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바, 각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결산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장충체육관의 임대업자 재정상황 악화로 임대료 미수납 1억 6천8백만원, 잠실종합운동장 내 임대업체인 (재)서울산업진흥원 임대료 2억 9천2백만원, 국민생활체육회 2억 5천8백만원 등으로

이는 출납폐쇄 기한이 그동안 회계연도 다음연도인 2월말까지였으나 2015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당해 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각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 지연으로 미납된

바, 2016년 1월에 납부 완료된 상태임. 다만, 법이 개정된 만큼 미납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기타사용료는 2015년 10월 징수결정액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및 장충체육관의 (주)스티븐스(뉴욕핫도그)에서 2015년 11월 관리비 체납된 건으로 현재 9차례 걸쳐 연체료를 부과하며 독촉을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 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그 외 수입 중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발생이자 미납건은 강서구 가양유수지복합센터 건립 완공(사업기간 : '14.10.6 ~ '15.5.9.)에 따라 정산 후 국비지원액에 대한 발생이자 4천2백만원이 부과<sup>5)</sup>(15.12.17.)되었으나 강서구에서는 2015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 2016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할 예정으로 있음.

이 밖에 서울관광사진전 사업비 환수 및 부당이득금 1천6백만원은 2009년 서울관광사진전 사업이 추진된 후 2010년 결산감사 시 부가가치세가 이중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2011년 12월 31일 업체가 폐업하여 2013년 12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12월 9일 최종 승소하여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였으나 반송됨. 이에 향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징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인 바, 사업 추진시 업체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고 사업정산시 회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5) 「2015도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400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중 세외수입의 예산과목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세외수입 예산과목별 내용>

예산과목	내용
공유재산임대료	장충체육관임대료, 월드컵경기장임대료, 서울시체육회관임대료, 목동운동장임대료, 잠실종합운동장 등 임대료
입장료수입	장충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입장료/관람권 수입
기타사용료	장충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목동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전용사용료
주차요금수입	장충체육관주차요금수입, 월드컵경기장주차요금수입, 목동운동장주차요금수입, 잠실종합운동장등주차요금수입
기타이자수입	잠실·목동운동장 임대료 분납금 등 이자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 5개시도 공동협력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변상금및위약금	노점상 등 변상금
시·도비반환금수입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M패스 판매수수료,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가족수당 반납, 소송비용 등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수입

## 나. 세출결산

### (1) 총괄

- 전년도이월금 465억 3천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011억 8천만원 중 88.7%인 2,674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7.7%인 232억 5천6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인 105억 2천만원임.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5	합계	46,538,863	301,179,750	267,404,200	23,255,634	10,519,916	88.7%
	일반회계	18,273,690	214,229,309	186,690,514	17,628,992	9,909,803	87.1%
	도시개발특별회계	28,265,173	86,950,441	80,713,686	5,626,642	610,113	92.8%
2014	합계	57,748,538	541,735,796	431,738,602	90,236,987	19,760,207	96.4%
	일반회계	28,429,865	444,052,123	367,811,067	57,714,265	18,526,792	95.8%
	도시개발특별회계	29,318,672	97,683,672	63,927,535	32,522,722	1,233,415	98.7%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이월금 182억 7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42억 2천9백만원 중 1,866억 9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176억 2천9백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6%인 99억 1천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82억 6천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9억 5천만원 중 807억 1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56억 2천7백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7%인 6억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음.

## (2)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6%인 99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0.7%인 6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관광체육국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3.5%인 105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3.5%는 2014년 3.6%에 비해 0.1%p 개선된 것이지만,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3.0%에 비해 0.5%p 높으며,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서울시 2.3%에 비해 2.3%p 높은 수치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2.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301,179,750	10,519,916 100%	2,642,887 25.1%	-	7,789,389 74.0%	87,640 0.9%
일반회계	214,229,309	9,909,803 100%	2,642,887 26.7%	-	7,179,276 72.4%	87,640 0.9%
특별회계	86,950,441	610,113	-	-	610,113	-

- 부서별로는 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105억 2천만원 중 체육진흥과가 43.7%인 45억 9천5백만원, 체육정책과가 28.7%인 30억 1천5백만원, 관광사업과가 14.6%인 15억 3천9백만원 등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195,955,619	214,229,309	186,690,514	17,628,992	9,909,803	87.1%
	특별회계	58,685,268	86,950,441	80,713,686	5,626,642	610,113	92.8%
	합계	254,640,887	301,179,750	267,404,200	23,255,634	10,519,916	88.8%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23,255,500	23,597,500	21,366,350	1,834,300	396,850	90.5%
관광사업과	일반회계	35,422,303	35,422,303	33,883,082	-	1,539,221	95.7%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65,911,072	65,933,772	62,214,405	1,314,341	2,405,027	94.3%
	특별회계	58,685,268	86,950,441	80,713,686	5,626,642	610,113	92.8%
	합계	124,596,340	152,884,213	142,928,091	6,940,983	3,015,140	93.5%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51,420,057	64,416,974	46,648,753	13,173,351	4,594,871	72.4%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19,946,687	24,858,759	22,577,925	1,307,000	973,834	90.8%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40억 6천만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8억 7천3백만원, 서울 글로벌 마케팅 7억 4천5백만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6억 1천만원 등임.

<2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 글로벌 마케팅	14,550,000	14,550,000	13,804,745	-	745,255	94.9%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432,020	13,432,020	12,989,312	-	442,708	96.7%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12,455,889	12,255,889	11,383,319	-	872,570	92.9%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2,362,954	2,362,954	2,006,185	-	356,769	84.9%
서남권 돛야구장 운영	2,665,687	2,865,687	2,367,385	-	498,302	82.6%
생활체육시설 확충	11,596,000	21,092,917	5,859,913	11,173,351	4,059,654	27.8%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6,404,940	6,404,940	6,077,065	-	327,875	94.9%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	52,575,000	80,840,173	76,413,686	3,816,374	610,113	94.5%

○ 생활체육시설 확충 집행잔액(예산현액 210억 9천3백만원 중 40억 6천만원)은 2015년도에 21개 사업(시설비 100억 6천3백만원, 자본보조 15억 3천3백만원)과 2014년도 이월된 7개 사업(명시이월 73억 2천9백만원, 사고이월 21억 6천8백만원)으로 총 28개 사업 중 미집행 8건, 10% 미만 집행 4건임(붙임3. 201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 강북, 노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집행잔액 (예산현액 15억 6천만원 중 11억 8천1백만원)은 어울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3천4백만원), 노원구 야구장 조성 문화재 시굴 조사비(3천4백만원) 집행 및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족구장 조성비 3억 1천만원의 이월액이며,

- 관악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예산현액 23억 5천1백만원 중 전액)은 타당성용역 조사결과 및 향후 공원지역 내 시설 설치에 따른 총족 등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의 자연보존요구 민원과 사업비 확보부분 등에서 사업의 지속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불용된 것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집행잔액 내역>

- 강북, 노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 11억 8천1백만  
어울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노원구 시민야구장 조성관련 문화재 시굴조사 비용 집행 및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족구장 조성비 이월 후 집행잔액
- 관악구 체육공원 조성 : 23억 5천1백만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체육시설 설치 부적합 결론에 따른 사업취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 동북권역체육시설확충 : 2014년도 3억 9천8백만원, 2015년도 8천3백만원  
공원조성 기본, 실시설계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 망원유수지 농구장 : 2천3백만원  
공사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 서울 글로벌 마케팅 집행잔액(예산현액 145억 5천만원 중 7억 4천5백만원)은 대행사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임.

동 사업은 글로벌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관광 해외홍보 및 서울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서울 이미지와 선호도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추경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관광 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중국, 동남아 등 주 타킷시장을 직접 찾아가 서울을 홍보하는 해외로드쇼 추진과 더불어 집중 홍보 마케팅을 통해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자 10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음.

<최근3년, 서울 글로벌 마케팅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5	14,550,000	13,804,745	745,255,	5.12%
2014	3,100,000	3,075,200	24,800	0.80%
2013	4,422,500	3,823,620	498,880	11.28%

동 사업의 경우, 공개입찰로 진행되어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가 유리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지속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간 예산을 살펴본 바, 전년도에 비해 3배이상 증가되었고, 2013년도 불용율 11.28% 대비 2015년도 불용율은 5.12%는 자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집행잔액이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으로 배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122억 2천6백만원 중 8억 7천3백만원)과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28억 6천6백만원 중 4억 9천8백만원)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sup>6)</sup>에 의해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감액된 것임.

6)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제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2014 기정예산 및 2015 예산(안) 산출 근거

2014년 : 11,218,138천원	2015년 : 12,401,889천원	증감 : 1,183,751천원
- 인건비 : 3,118,195천원	- 인건비 : 3,940,228천원	- 인건비 : 822,033천원
- 경비 : 6,589,258천원	- 경비 : 7,198,523천원	- 경비 : 609,265천원
- 기관성과금 : 435,185천원	-	- 기관성과금 : △435,185천원
- 간접관리비 : 1,061,311천원	- 간접관리비 : 1,258,109천원	- 간접관리비 : 196,798천원
- 예비비 : 14,189천원	- 예비비 : 5,029천원	- 예비비 : △9,160천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의 경우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만에 인건비가 전년 대비 26.4%, 경기비 전년대비 9.2%, 간접관리비 전년대비 18.5% 증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2014년 결산전망 시 인건비가 41억 4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은 31억 1천8백만원에 불과하여 10억원이나 부족한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받았고,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은 당초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위탁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이 된 상태에서 2015년 7월 10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서남권돔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장식 개최 비용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비품류 구입 등을 반영하여 추경에 10억 6천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4억 9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이는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 집행잔액(예산현액 808억 4천만원 중 6억 1천만원)은 2016년 공사집행 예정인 안양천 다목적광장 및 돛구장 주변환경 정비 소요예산을 이월하고 남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서 안양천 다목적광장의 하천점용허가가 늦어져 감리원의 추가 투입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서남권 돛야구장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돛구장 관련 총 6차례 설계변경을 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408억원에서 1,948억원으로 증가했던 사례를 초석삼아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바, 차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통계목 기준 불용율이 큰 사업은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예산현액2억 2천만원),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 (525억 7천5백만원),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S리그)운영 (10억원), 관광안내소 운영 (49억 2천1백만원) 등임.

< 30%이상 불용율 사업 현황\_통계목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관광안내소 운영	시설비	30,000	30,000	13,610	-	16,390	54.6%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사무관리비	3,000	3,000	1,450	-	1,550	51.7%
의료관광 활성화	전산개발비	121,635	121,635	83,130	-	38,505	31.7%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무관리비	19,000	19,000	13,274	-	5,726	30.1%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7,790	147,790	-	-	147,790	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72,210	72,210	30,000	-	42,210	58.5%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S리그) 운영	사무관리비	50,000	50,000	20,706	-	29,294	58.6%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시설부대비	130,000	148,557	24,897	14,700	108,960	73.3%
체육시설관리사 업소 운영	국고보조금반환금	16,377	16,377	-	-	16,377	100%

- 시민체력인증제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sup>7)</sup> 불용액(예산현액 1억 4천 8백만원 전액)과 자치단체자본보조<sup>8)</sup> 불용액(예산현액 7천2백만원 중 4천2백만원)의 경우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는 ‘국민체력 100사업’을 실시하여 서울시내 체력인증센터 2개소(성동, 서초) 운영 중이나 원거리 이용불편 등으로 타자치구 시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7)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8)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서울시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체력인증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력측정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거점 체력인증센터를 연차별 확대하고자 하였음.

이에 금천구의 경우 2015년 1월 2일 '2015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장비구입 및 운영비 확보로 예산이 절감되어 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수비만 지원하게 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함.

다만, 국비 공모사업이 2015년 1월 2일 상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체력인증센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의 시설부대비 불용액(예산현액 1억 4천9백만원 중 1억 9백만원)은 공사감독여비, 각종 수수료, 공고료 등으로 활용되며, 전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편성하는데 2014회계연도에서 예산현액(1억 3천만원)의 14.3%인 1천9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나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다만, 2015년 9월 15일 공사가 완공되는 계획이 이미 정해졌던 바,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을 포함하여 다시 73.2%가 명시·사고 이월되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시설비의 경우,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나 결과적으로 실집행예산보다 과다한 예산편성은 불용액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산정함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S리그)운영의 사무관리비 불용액(예산현액 5천만원 중 2천9백만원)은 홍보 및 접수기간(30일)이 짧아 온오프라인 등 홍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2015년 신규 사업이자 시장 정책공약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게 최종 목표임에 따라 일회성(시장기, 연합회장기) 대회가 아닌 특정 단체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체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 계획수립과 편성 후 집행 과정의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관광안내소 운영의 시설비 불용액(예산현액 3천만원 중 1천6백만원)은 고정식 관광안내소 10개소 중 2015년 시설공사 3개소(동대문, 삼일교, 광화문)의 자동출입문 교체공사가 있었고, 그 외 시설이 대부분 2012년 이후 설치됨에 따라 유지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서울시 관광안내소 개소 및 재설치 현황 >

광화문	2010년
남대문	2010년
삼일교	2010년
동대문	2013년
시민청	2013년
신촌역	2014년
잠실	2014년
DDP	2014년
이태원	2015년
홍대입구	2016년

다만, 매년 시설비로 3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5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비록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소액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에 해당되는 바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집행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3년, 관광안내소 시설비 및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2015	30,000	16,000	3개소 자동출입문 교체공사
2014	30,000	19,000	4개소 시설 보수공사
2013	30,000	14,960	안내소 폐쇄 및 철거비 및 이동설치비

더불어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분석한 자료<sup>9)</sup>에 따르면 2015년 고정식 관광안내소 모니터링 결과 전년도보다 2.4점이 높은 총 87.5점으로 업무수행태도, 최초응대, 종료태도 등 태도면에서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방문 의향, 업무 적극성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9)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201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 p137

< 최근 2년, 고정식 안내소 모니터링 결과 >

(단위 : 점)

연도	평균	최초응대	응대태도	업무수행태도	종료태도	종합평가
증가(A-B)	2.4	3.2	1.8	4.2	2.6	0.6
2015년(A)	87.5	89.9	93.5	96.9	81.2	75.9
2014년(B)	85.1	86.7	91.7	92.7	78.6	75.6

관광통역안내원 자격 요건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외국인 관광안내에 필요한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자이며, 외국어 어학능력(시험성적)이 기준을 만족하면서 회화가 가능한 자여야 하나 '관광통역사'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현원대비 총 평균 5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안내소 정원/ 현원(2015.9기준) >

(단위 : 명)

구 분	정원	현원	자격증	
			소지자	소지율
합 계	128	117	64	54%
고정식관광안내소	44	42	28	66%
움직이는관광안내소	84	75	36	48%

\* 관리직 5명 별도 (총 133명)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이 2012년 2,904천명, 2013년 3,371천명, 2014년 4,420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안내사들의 관광정보 제공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포함하여 전체 서울 소재 관광안내소 운영·위탁업체 현황은 17개 운영기관에 46개소가 운영 중임.

< 관광안내소 이용률 현황 >

년도별	2012	2013	2014
이용률	2,904천명	3,371천명	4,420천명

다만, 2014년 외래관광객 안내소 이용실태 조사에서 서울시에서 자체 생산한 관광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뿐 타기관 안내소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5년 9월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사이트인 'KOTIS'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안내소간 쌍방향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관광안내소 협의체의 회의가 1회(2015.9.14.)에 그쳤다는데 아쉬움이 있음.

< 서울소재 관광안내소 현황 >

(단위 : 개소)

관리주체	합계	서울시 (2)	자치구 (6)	문체부	코엑스	철도 공사	공항 철도	제주관 광공사
운영기관	17	2	7	2	1	3	1	1
개소수	46	24	11	4	1	4	1	1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2,219,673	2,561,673	1,479,956	1,047,000	34,717	57.8%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 센터 운영 활성화	1,357,783	1,357,783	909,701	400,000	48,082	67.0%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	22,700	16,744	-	5,956	73.8%
뚝섬승마장 리모델링	150,000	150,000	-	114,341	35,659	0.0%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220,000	220,000	30,000	-	190,000	13.6%
생활체육시설 확충	11,596,000	21,092,917	5,859,913	11,173,351	4,059,654	27.8%
목동운동자·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4,000,000	5,200,000	3,776,145	1,307,000	116,855	72.6%
효창운동장 시설 개·보수	800,000	800,000	637,953	-	162,047	79.7%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현액 대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뚝섬승마장 리모델링과 더불어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13.6%, 생활체육시설 확충 27.8%,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개발 활용사업 57.8% 등의 집행률을 보임.

○ 뚝섬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률 0%의 경우, 현 뚝섬승마장을 전액 시 단독투자자로 ‘말 문화관’을 설치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운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준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및 승마장 조성에 대한 법령상 제한<sup>10)</sup>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서울숲 내 승마장 이전 검토를 추가 진행하게 되었고 과업 내용 및 대상지가 변경되

10)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신축 불가

-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20% 이하) 및 용적률(50% 이하)제한과 시설물 한도로 실내승마장 증설 곤란



어 과업 완수 기한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기본설계 용역에서 새로운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되어 집행을 못한 것임.

-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사업의 집행률 57.8%의 경우, 스토리텔링 관광시설물 제작·설치를 계획하여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최종 홍대로 결정하는데 5개월이 소요 됐으며,

스토리텔링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 공모를 9월에 실시하였으나 참여업체의 평가가 70점 미만으로 유찰이 되었고, 2차 공모시(10월) 디자인 수정 등의 조건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조건 미충족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시점에서 업체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2개월('15.11. ~ 12.)에 걸쳐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여러 사항들로 인해 집행이 저조하게 됨.

-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의 집행률 67.0%의 경우, 여행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조성계획 수립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이 6개월 소요되었고('15.3 .~ 9.)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결과가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의 되는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음.

### (3) 예산의 전용 · 변경 · 이체사용

-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4건, 5억 7천6백만원, 변경사용은 총 3건, 2억 9천3백만원, 이체사용은 총 42건, 613억 1천8백만원임.

####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4건		3,259,469	576,000	576,000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1,239,183	392,500	-	2015-09-08
	시설비	-	-	392,500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846,683	7,500	-	2015-09-08
	감리비	-	-	7,500	
서울 대표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무관리비	1,073,603	76,000	-	2015-03-30
	자산및물품취득비	-	-	76,000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	2015-08-03
	사무관리비	-	-	100,000	

-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개별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여행자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2014년 6월, 태국의 카오산로드와 같은 배낭여행객들의 필수방문지이자 여행정보편의시설 집합지를 만들자는 시장요청으로 계획한 바,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대행수수료 절감 및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억원을 시설조성(공사)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민간위탁금 → 시설비, 감리비)으로 전용한 것임.

- 서울 대표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서울시 대표외국어 홈페이지의 장비(웹서버 6식)는 2008년 12월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5년)를 기경과해 교체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예산과목(편성목)분류착오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7천6백만원을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사무관리비 → 물품 및 자산취득비)으로 전용한 것임.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

영문 : english.seoul.go.kr
중국어 간체 : chinese.seoul.go.kr
중국어 번체 : tchinese.seoul.go.kr
일문 : japanese.seoul.go.kr
불어 : french.seoul.go.kr
스페인어 : spanish.seoul.go.kr

-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사업은 서울 MICE포럼의 경우 국내외 MICE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서 행사준비 및 진행을 주관할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워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1억원을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 → 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한 것임.

다만, MICE 사업은 2018년 세계 3위를 목표로 하는 시장 공약 사항 중 하나이고, 2015년의 신규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해왔던

사업중 하나이며, 업체 선정역시 1/4분기 내에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 선정이 어려워 예산과목을 전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승인일자 또한 2015년 8월 8일에 이루어진 결과로 보아 예산편성 시 충분하고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3건		13,313,889	293,500	293,500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사무관리비	722,000	3,500	-	2015-11-18
	특정업무경비	-	-	3,500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사무관리비	190,000	90,000	-	2015-04-06
	연구용역비	-	-	90,000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2,401,889	200,000	-	2015-10-14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	-	200,000	

-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사업은 관광체육국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조직개편 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이었던 5급 이하 직원 59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재배정 되었으나 조직개편 이후 추가 전입된 42명의 직원이 미반영 되어 확보하고자 3천5백만원을 변경(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하게 되었으며,

본청 5급 팀장 직책업무비를 미지급하는 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민활동비를 소급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임.

-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사업은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16년 종료를 앞두고 2017년 ~ 2021년까지 서울권역의 관광 개발사업의 지침이 될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9천만원을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사무관리비 → 연구용역비)으로 변경한 것임.

다만, 변경일이 2015년 4월 6일자로 상반기에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하고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짐.

-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과 서남권 돛야구장 운영** 사업은 서남권 돛야구장의 개장 및 시정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쿠바 국가대표 평가전('15.11.4.)에 국제대회 지원금 수준인 2억원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의 민간위탁금에서 서남권 돛야구장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재정지원 하고자 변경한 것임.

다만, 2015회계연도 추경시 서남권 돛야구장은 예산을 10억 6천500만원을 증액한 바,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지출이 이뤄지도록 했었어야 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의 경우 최근 3년 전용과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15억 원씩 증가되는 반면, 2013년 2억 1천3백만원이던 불용액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전용과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8억원으로 급증하였음.

이는 매년 예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용액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의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계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최근3년, 예산 전용,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예산액	변 경	전 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3	9,349	-	-	9,348	9,135	213
2014	11,384	-	475	10,908	10,082	826
2015	12,456	200	-	12,256	11,383	873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11)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민선 6기 2차 조직개편 시 2015년 7월1일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관광과 체육 분야를 분리해 전담국인 관광체육국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7월 24일 승인을 받아 총 42건의 613억 1천8백만원이 이체된 것임(결산서 63쪽 참조).

1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18건, 180억 2천1백만원, 사고이월 총 5건, 52억 3천4백만원 등 총 23건, 예산현액 대비 7.7%인 232억 5천6백만원으로

지난 해 이월액 902억 3천7백만원과,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16.7%에 비해 이월액은 669억 8천1백만원 감소하고 이월률은 9%p 낮아져 2015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세출결산 이월액 7,817억 6천3백만원의 3.0%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관광체육국 이월액 176억 2천9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3,149억 2천3백만원의 5.6%에 해당하고, 특별회계는 관광체육국 이월액 56억 2천7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특별회계 이월액 4,668억 4천만원의 1.2%에 해당함.

#### <관광체육국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	일반회계	214,229,309	17,628,992	12,694,613	4,934,379	8.2%
	특별회계	86,950,441	5,626,642	5,326,704	299,938	6.5%
	합계	301,179,750	23,255,634	18,021,317	5,234,317	7.7%
2014년	일반회계	440,052,123	57,714,265	45,122,011	12,592,253	13.0%
	특별회계	97,683,672	32,522,722	30,106,943	2,415,779	33.3%
	합계	541,735,795	90,236,987	75,228,954	15,008,032	16.7%

#### <서울시 세출결산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19,213,944	314,923	218,099	96,824	1.6%
특별회계	7,898,160	466,840	356,285	110,555	5.9%
합계	27,112,104	781,763	574,384	207,379	2.9%

-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111억 7천3백만원),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38억 1천6백만원), 금호동 배수지 배드민턴장 조성지원 (20억원),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18억 1천만원), 목동 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13억 7백만원) 등에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100%),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환경 개선(80%), 뚝섬승마장 리모델링(76.2%) 등 사업이 예산현액의 대부분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명시이월 사유 중 일반회계를 보면,

-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의 전액이 시설비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조계종단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복궁, 견지동, 인사동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견지동 일대 10·27법난기념관<sup>12)</sup> 건립 및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계사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sup>13)</sup>을 추진하는 사업임.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KDI<sup>14)</sup> 사업적정성 용역이 2015년 8월에 완료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전절차가 4개월

12)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0·27법난기념관은 10·27법난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기 위한 공간임.

13) “조계사주변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고시(2013)

14)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

- 목적 :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 용역기간 : 2014.10. ~2015.8

- 용역결과 : 사업규모(법난기념관 2개동, 연면적 18,633㎡) 및 총 사업비 1,670억원 확정(국비 1,513억원, 조계종단 자부담 157억원)



지연되었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 입찰이 2회 유찰(2015.11.25. 1차 공고, 2015.12.24. 재공고)됨에 따라 명시이월 된바, 관광정책과에서는 2015년 10월 1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사업비(3억원)를 조계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소관부서인 한옥조성과에 재배정하였고, 한옥조성과에서는 2015년 10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거쳐 2016년 1월 11일 계약자를 선정한 뒤 2016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임.

- **금호동 배수지 배드민턴장 조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0억원의 100%인 전액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2015년 7월에 실시한 배수지 안전진단 결과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2016년 보수 보강 후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하고자 전액 이월 된 것으로 2017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임.

○ 명시이월 사유 중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보면,

-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환경 개선 사업과 구일역사 성능개선 사업** 2건으로 2015회계연도 추경시 신규 편성된 사업이며,

각각 예산현액 15억원의 80%인 12억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이, 예산현액 61억 1천만원의 29.6%인 18억1천만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환경 개선 사업은 돛구장과 인접한 학교 방음벽 설치 및 안양천철교 하부 인도를 정비하기 위해 편성된 바, 구일역 동측 출구에서 돛구장 접근시 이용하는 안양천철교하부 인도 및

난간, 조명, 안내 사인물 등의 보수·보강 및 신규설치가 2015년 10월 완료되었으나,

그 당시 돔구장 인접학교(경인고등학교, 고원초등학교)의 민원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돔구장 소음측정('15.10.10.) 후 민원인(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2015.12.21.)하여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변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절대 공기의 필요로 인해 2015년 내에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된 바, 2016년 8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구일역사 성능개선 사업은 구일역사에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고 역사를 확장해 연결통로를 확보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2014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 실시설계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증액사업비를 2014년 11월에 요구해 옴으로써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임.

게다가 동 사업의 공법변경 등에 따른 물량추가로 인해 2016년 6월로 준공이 됨에 따라 사업진행 공정에 맞추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자 함.

다만, 2건 모두 2015회계연도 검토보고서에서 “출납폐쇄기한에 어긋남에 따라 이월될 가능성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지적된 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계획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 **주요거점별 관광정보센터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5천8백만원의 29.5%인 4억원(3억 6천8백만원 명시이월, 3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동 사업은 흥대에 여행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조성계획 수립 후 지역민(문화예술인, 상인, 거주민, 관광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 협의 등의 과정이 6개월 소요되었고('15.3 .~ 9.), 지역민 의견을 반영하여(지역을 잘 아는 흥대 출신의 건축가가 설계 추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주관부서인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4억원을 시설조성(공사)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민간위탁금 → 시설비, 감리비)으로 2015년 9월 8일 전용하였음.

이후 편의시설 설계용역을 발주('15.9.14., 시설비)하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의 되는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에 2015회계연도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미 발주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 일부와 감리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재심의 되었던 설계용역(완료 2016.1.31.) 또한 마무리 되지 않아 사고이월 한 것임.

- **뚝섬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천만원의 76.2%인 1억 1천4백만원(5천만원 명시이월, 6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동 사업은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서울숲 내 승마장 이전 검토를 추가 진행함에 따라 과업 내용 및 대상지가 변경되어 당초 기본설계 용역에서 새로운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되어 기간('15.10.16. ~ 12.24.)이 기존보다 연장된 2016년 2월 29일에 마무리 됨에 따라 6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6년 5월 2일 지급) 그 외 5천만원은 2016년 7월경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로 명시이월 되어 2015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지 못한 것임.

-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210억 9천3백만원 중 53.1%인 111억 7천3백만원(63억 3천5백만원 명시이월, 48억 3천8백만원 사고이월)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우선 사고이월을 살펴보면,

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 중 72.3%인 2억 1천7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당초 동북권역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14.12.)이 수립되었으나 동북4구사업단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삼지 조성계획에 근거한 창동운동장 계획 시설물 이전계획(안)('15.7.)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2015년 8월에 변경하게 됨.

이에 2015년 8월 25일 동북권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알림 및 체육공원조성 추진의뢰에 의거 도봉구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15.11.), 도시계획시설결정('16.6.)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공사완료 가 어려워 사고이월되었고,

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 야구장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8억 7천8백만원 중 전액이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연이어 2015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내에 성인과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각각의 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주체인 서울대공원,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협이가 6개월 지연되었고, 결국 서울대공원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 후, 2015년 7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설계, 계약심사, 공사 발주 등 추진과정에 있으나, 계약 및 시공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사고이월 된 것임.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신내동 차량기지내 체육시설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3천6백만원의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이는 도시철도공사와 부지 무상사용 및 운영관련 협의 중으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명시이월되었고,

월곡동 운동장 축구장 조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0억원의 전액이 월곡동운동장이 암반에 위치하여 기본계획 용역(타당성조사 포함)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북한산 인공 암벽장 조성 사업 역시 예산현액 10억원의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부지 무상사용 협이가 10개월 지연됨에 따른 것임.

그 외 사유별로는 타 유관기관과의 부지 및 토지 이용 협의중,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공사지연, 사업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집행 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이에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시민의 불편은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2,561,673	1,047,000	1,047,000	-	40.9%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1,319,800	87,300	87,300	-	6.6%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1,357,783	400,000	368,090	31,910	29.5%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300,000	300,000	300,000	-	100%
뚝섬승마장 리모델링	150,000	114,341	50,000	64,341	76.2%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환경 개선	1,500,000	1,200,000	1,200,000	-	80%
생활체육시설 확충	21,092,917	11,173,351	6,335,223	4,838,128	53%
금호동 배수지 배드민턴장 조성지원	2,000,000	2,000,000	2,000,000	-	100%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5,200,000	1,307,000	1,307,000	-	25.1%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	80,840,173	3,816,374	3,516,436	299,938	4.7%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6,110,268	1,810,268	1,810,268	-	29.6%

###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14,229,309	17,628,992	12,694,613	4,934,379	8.2%
	특별회계	86,950,441	5,626,642	5,326,704	299,938	6.5%
	합계	301,179,750	23,255,634	18,021,317	5,234,317	7.7%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23,597,500	1,834,300	1,802,390	31,910	7.8%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65,933,772	1,314,341	1,250,000	64,341	2.0%
	특별회계	86,950,441	5,626,642	5,326,704	299,938	-
	합계	152,884,213	6,940,983	6,576,704	364,279	-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64,416,974	13,173,351	8,335,223	4,838,128	20.5%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24,858,759	1,307,000	1,307,000	-	5.3%

- 부서별 이월률은 관광정책과(7.8%), 체육진흥과(20.5%) 등이 관광체육국 전체(7.7%)에 비해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와 관광정책과의 이월률이 높은 것은 금호동 배수지 배드민턴장 20억원(100% 이월), 서남권 돛야구장 주변환경 개선 12억원(80% 이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 조성 3억원(100% 이월)등 특정 사업이 부서 전체 이월율에 영향을 미쳤음.

- 관광체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에 집행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 사업비 중 출납폐쇄기한인 2015년 12월 31일 내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산액을 2015회계연도의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는 총 10건임.

이번 회계연도의 경우 출납폐쇄기한의 단축<sup>15)</sup>으로 인하여 정산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바,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인한 연말 지출업무 처리의 혼란이 미리 예견되었던 만큼 사전에 조정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관광체육국>

세부사업명	집행액	정산잔액	정산일	환수일	사유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4,755	53	2016.1.13	2016.3.2	집행잔액
주요 거점별 관광 정보센터 운영활성화 (민간위탁금)	807	1	2016.2.5	2016.3.10	집행잔액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육성 (민간위탁금)	861	39	2016.2.25	2016.2.26	집행잔액
서울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2,525	463	2016.1.15	2016.3.2	집행잔액
서울월드컵 경기장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1,619	160	2016.3.29	2016.4.5	집행잔액
서울월드컵 경기장 위탁운영 (민간대행사업비)	52	2	2016.3.29	2016.4.5	집행잔액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863	120	2016.3.30	2016.4.5	집행잔액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민간대행사업비)	19	3	2016.3.30	2016.4.5	집행잔액
서남권 돛야구장 운영 (민간위탁금)	1,650	25	2016.4.5	2016.4.6	집행잔액
서남권 돛야구장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461	15	2016.4.5	2016.4.6	집행잔액

15)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에 폐쇄하는 것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다. 기금

-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 565억 7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87억 1천만원을 조성하고 58억 9천3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93억 9천4백만원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6,576,202	2,817,397	8,710,262	5,892,865	59,393,599

###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용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9,294,518	7,500,000	584,256	1,210,262	9,176,482	5,890,371	2,494	3,283,617

- 2015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59억 9천2백만원에 대한 예탁금이자수입이 11억 9천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인 예치금회수가 5억 8천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1백만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75억원 등 92억 9천5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9,622,327	-	9,622,327	9,294,518	9,294,518
공공예금이자수입	15,100	-	15,100	11,022	11,022
기타이자수입	-	-	-	46	46
예치금회수	584,256	-	584,256	584,256	584,256
기타회계전입금	7,500,000	-	7,500,000	7,500,000	7,500,000
예탁금이자수입	1,522,971	-	1,522,971	1,199,193	1,199,193

○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야구장 시설 개보수,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생활체육지도자육성 지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 18개 기금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계획현액 78억 8백만원 대비 75.5%인 58억 9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에 대비 27억 5백만원이 늘어난 32억 8천4백만원의 예치금(체육진흥기금 잔고)이 발생했음.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상당액은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야구장 시설 개·보수 23억원, 꿈나무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5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그 밖에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억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6억원,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체육정책사업 추진 지원 1억원,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천만원 등 전체 7개 사업, 40억 2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체육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9,622,327	-	9,622,327	9,176,482	95.4%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650,000	-	650,000	500,000	76.9%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280,000	-	280,000	280,000	1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000	-	80,000	80,000	1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000	-	20,000	20,000	1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	600,000	530,000	88.3%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	20,000	20,000	10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500,000	-	500,000	466,105	93.2%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200,000	-	200,000	200,000	1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50,000	-	150,000	150,000	100%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16,680	-	16,680	7,810	46.8%
서울시 체육진흥정책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80,000	-	80,000	58,108	72.6%
야구장 시설 개보수	2,300,000	-	2,300,000	1,905,682	82.9%
돛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800,000	-	800,000	54,461	6.8%
목동빙상장 정빙기 구매	200,000	-	200,000	199,724	99.9%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951,144	-	951,144	938,972	98.7%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400,000	-	400,000	400,000	100%
노원구 야구장 건립	50,000	-	50,000	50,000	1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500,000	-	500,000	29,509	5.9%
소계	1,824,503	-	1,824,503	3,286,111	180.1%
기금관리비	10,000	-	10,000	2,494	24.9%
여유자금 예치	1,814,503	-	1,814,503	3,283,617	181%

###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16,680	7,810	46.8%
돔구장 야구테마거리조성	800,000	54,461	6.8%
기본경비	10,000	2,494	24.9%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500,000	29,509	5.9%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5억원, 돔구장 야구테마거리조성 8억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사업 1천7백만원 등임.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사업의 집행실적(집행계획 5억원 중 3천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15.6) 지연으로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후속 용역이 미발주됨에 따라 1억 1천8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 돔구장 야구테마거리조성 사업의 집행실적(집행계획 8억원 중 5천5백만원)은 야구 테마거리 조성방향설정과 실시설계 용역이 2015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 발주가 연내 진행이 불가능하여 용역비 5천4백만원을 제외한 7억 4천6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기본경비의 집행실적(집행계획 1천만원 중 2백만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료 인쇄비, 참석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당초 7회 계획을 했으나 3회 개최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의 집행실적(집행계획 1천7백만원

중 8백만원)으로 동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휴일에 발생하는 각종 생활체육의 대외지원에 대한 휴일근무보상과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바, 당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8명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6명) 등으로 지급대상이 22명으로 축소됨과 동시에 사업 첫해로서 계획수입 등 절차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3월부터 지급이 되어 2개월 미지급분이 발생하게 된 것임.

<2015년 체육진흥기금 사업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당초계획액	증감액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일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0	16,680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근속수당 지급	2015.2.16.
야구장 시설 개보수	2,000,000	300,000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 추가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0	800,000	돔구장 주변 교통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96,400	54,744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600,000	-200,000	사업규모 축소 조정	
노원구 야구장 건립	0	50,000	동북지역의 부족한 사회인 야구장 확충 용역	
체육정책사업 추진 지원	100,000	-100,000	자치구 체육정책 추진 인센티브로 편성 하였으나 자치구 업무 부담으로 폐지	2015.5.21.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0	150,000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참여에 따른 체육용품 지원	
서울시 체육진흥정책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0	80,000	체육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	
목동빙상장 정빙기 구매	0	200,000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등 국제대회의 정상적 운영 대비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500,000	생활체육시설(야구장) 확충 위한 기본 용역	

○ 2015회계연도 내에 변경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2015년 2월 16일 총 3건, 2015년 5월 21일 총 4건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 돔구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흥미유발과 보행동선 분산을 도모하고자 야구역사 및 야구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8억원이 편성되었고,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사업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야구를 통한 생활체육활동 증가로 야구장 건립 요구 증가와 필요성이 대두되어 5억원이 편성되었음.

- **목동빙상장 정빙기 구매** 사업은 빙상장 아이스링크의 지속적인 정빙을 위해 최소 2대의 정빙기가 필요하나, 목동빙상장의 경우 총 3대 중 2대가 기계결함 및 내부공기오염 유발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신규 정빙기 1대를 구입하고자 2억원이 편성되었고,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제한적인 어르신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사회성 유지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임.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 **야구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및 전광판 바닥공사 외 3건의 사업을 하고자 당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추가되며, 사업비 조정과 3억원을 증액한 바, 신규 7개소의 화장실을 추가 개선(총 36개소, 남 14, 여 22)한 것이고,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당초 8억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휴일근무수당 지급율(97% → 100%)변경 및 근속자들의 지급기준(3년, 4~5년, 6년차 → 3년, 5년, 7년, 10년차)을 변경함에 따라 5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 체육정책사업 추진 지원 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 능력으로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어려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신규편성 되었으나, 체육진흥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자치구 업무가중 부담과 사업공모 참여에 대한 수요나 반응이 미미하여 신규 편성된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되새기고 전통종목 참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당초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2억원이 삭감된 것임.

- 기금사업은 예산사업과 달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금운용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 기금의 재원으로 그대로 남아 불용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2013년, 2014년에는 체육진흥기금의 변경이 전혀 없었는데 반해 2015년에는 총 1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신규, 2개 사업이 증액, 2개 사업이 감액으로 인한 변경이 있었고,

이는 2015회계연도부터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른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기금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은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기금운용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5. 종합검토의견

### ○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결산에서는

관광체육국 전체의 지난년도수입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변상금,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등 고질적인 체납액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완성을 앞두고 있음.

대부분의 미수납액들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사용료를 징수·납부하고,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시행된 2006년 1월 1일 이전 또는 법 시행 초기에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 시행이전부터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미수납액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전년대비 매년 반복되는 경비인 경상적 미수납의 발생 규모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바, 각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세입 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입추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의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으로 배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붙임1.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관련 소송 경과

- '08.04.04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자 선정 공고 (일반경쟁입찰)
- '08.04.30 :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1년 : '08.5.1~'09.4.30, 위탁료 2,300백만원)
- '09.05.28 : 위·수탁관리 갱신계약 체결(1년 : '09.6.1~'10.5.31, 위탁료 1,537백만원)
- '09.06.05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통보(분납 2회분 768백만원)
- '09.10.18 : 사용·수익허가 취소
- '09.10.20 : 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원고 : 남산골프클럽)
- '09.10.30 :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서울행정법원)
- '09.11.17 : 부설주차장 시설물 등 인계 요청
- '10.01.27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 ⇒ 이후 계속하여 부과 중
- '10.06.25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인용 결정(7.12)
- '10.07.02 : 행정소송 승소 ⇒ 원고 항소(8.27)
- '10.07.05 :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 시 패소('10.11.15, 기각)
- '10.07.2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 '10.08.03 :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부설주차장 정상화 운영 대책 수립
- '10.08.12 : 주차부스 인수 시도 ⇒ 수탁업체의 용역(40명) 동원 방해로 포기
- '10.09.09 : 부설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소송 추진대책 수립
- '10.09.14 : 부동산 명도 청구
- '10.09.16 : 손해배상 청구(원고 : 서울남산골프클럽)
- '10.09.20 : 업무방해로 사업소 직원 5명 피고소 ⇒ 무혐의 처분(서울동부지검)
- '10.09.30 :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형사고소 ⇒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 '10.10.05 : 공유재산관리 T/F팀 구성 ⇒ 연 4차 회의 개최
- '10.12.06 : 주차장 관련 대책회의(기획조정실장 주관)
- '10.12.10 : 주차장 사무실·식당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 '10.12.14 :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서울중앙지검)
- '10.12.16 : 중요소송 지정(명도소송,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
- '10.12.27 : 카드매출채권 압류 추심(235백만원)
- '11.01.21 :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 '11.02.08, 02.10 : 주차장 관련 대책회의(문화관광기획관 주재)

- '11.03.11 :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 3.23 집행문 고시
- '11.03.18 : 주차장 무료개방 운영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11.03.24 : 주차장 무료개방(정상운영 시까지)
- '11.03.29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11개월 : '11.04.01~'12.02.29)
- '11.04.13 :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시 승소) ⇒ 4.27 대법원 상고
- '11.04.22 : 국민은행 예금채권 압류 추심(9백만원)
- '11.05.11 : 카드매출채권 압류 2차 추심(24백만원)
- '11.05.18 : 손해배상청구 선고(시 승소)
- '11.05.20 : 단전·단수처분취소소송 선고(시 승소) ⇒ 주차장 사무실 단전·단수 통보('11.06.17)
- '11.06.01 : 부동산명도 선고(시 승소)
- '11.06.16 : 부동산명도 피고 항소
- '11.08.19 : 부동산명도 쌍불
- '11.08.26 : 부동산명도 2회 쌍불
- '11.09.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판결 선고(징역 1년, 법정구속)
- '11.09.27 : 부동산명도 항소취하 간주(시 승소)
- '11.09.30 :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 수사재기명령(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11.10.13 :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1심 선고(시 승소)
- '11.11.18 :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피고 항소
- '12.08.16 :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2심 선고(시 승소) ⇒ 9.7 소 확정
- '12.12.28 : 특경법위반(사기) 등 불구속 공판 결정
- '13.06.14 : 특경법 위반(사기), 강제집행면탈 1심 선고(징역 2년, 법정구속)
- '13.06.19 : 피고 항소
- '13.08.16 : 체납법인(서울남산골프클럽) 대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3.10.02 : 피고 체납금액 일부 납부(금 50백만원)
- '13.10.18 : 특경법위반(사기), 강제집행면탈 2심 선고(항소 기각)
- '13.10.23 : 피고 상고
- '14.01.16 : 특경법위반(사기) 3심 선고(상고 기각)
- '14.04.30 :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시 일부 승소(92%))
- '14.05.2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4.5.22. 인용
- '15.03.19 :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시 일부 승소(92%))
- '15.04.03 : 확정(피고 상고 포기)

## 붙임2. 뚝섬승마훈련원 관련 소송 경과

- '86.05.12 : 한국마사회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 '89.06.28 : 뚝섬체육공원 종합이용계획 수립 시까지 서울시승마협회 무상사용 허가
- '90.12.20 : 뚝섬체육공원 종합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무상사용 종료로 유상사용 허가신청을 촉구하였으나 무상사용 요구하며 계약체결 거부
- '03.06.27 : 서울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04.03.22 : 뚝섬승마장 이전계획 수립
- '07.06.20 : 공유재산 무단사용(5년간)에 대한 변상금(3,102백만원) 부과
- '09.10.15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서울시 패소
  - '91년 이후 시와 협회의 관계를 볼 때 묵시적·추정적 사용허가로 간주됨
  - “승마장에 관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이 사건 이 사건 처분당시까지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별도로 적정한 사용료에 관한 협상·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 '10.01.28 : 뚝섬승마훈련원 변상금 부과 취소
- '10.03.18 :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부과 계획 수립
  - 변상금 소송의 패소에 따라 당초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검토하였으나 행정재산으로 법률적 성질이 공법관계이므로 민사소송 제기 불가
  - 변상금 소송 법원 판결에 따라 묵시적·추정적 계약(사용승인)으로 보아 사용료 대체 부과 여부 검토 ⇒ 자문변호사 다수의견 : 현재부터 소급하여 5년의 사용료 부과 가능
- '10.03.23 :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부과 통지[사업소 → (사)서울시승마협회]
  - 부과기간 : 2005.06.18~2010.02.28(1,716일)
    - ※ 지방재정법상 부과기간인 5년 중 개·보수공사 진행기간('04.10.15~'05.06.17) 제외
  - 사용료 : 1,983,877,230원
- '10.10.04 ~ 12.31 : 공유재산 관리 T/F 구성 운영(회의 개최 4회)
- '11.04.27 :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설정행위 해소 촉구(사업소 → 승마협회)
- '11.05.20 : 사업소 현안사항 부시장 보고 ⇒ 정책회의 상정 지시
- '11.08.17 : 뚝섬승마훈련원 현안사항 검토회의
- '11.09.19 : 뚝섬승마훈련원 쇄신방안 제출요구(서울시 → 협회)
- '11.12.06 : 승마장 운영개선안(협회 → 서울시)
  - 사권설정 문제 해결시까지 승마장 무상사용·수익 요구

- '11.12.30 : 5년간('07.01.01~'11.12.31)의 사용료 2,195백만원 부과
  - 사용료 선(先)부과 후, 협회가 기부담한 개·보수 공사비 상계가능 통보
- '12.05.30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 '12.06.07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제기(승마협회)
- '12.08.02 : 부동산명도 청구의 소 제기(시 → 협회)
- '12.08.20 : 부동산명도 청구의 소 제기(시 → 자마회원)
- '13.02.01 : 손해배상 소송 제기(권기찬 외 23명 - 소송가 920백만원)
  - 승마협회에 입회금을 내고 가입한 개인(3천만원) 혹은 법인 회원(5천만원)이 서울시가 승마협회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3.03.28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시 승소
  - 사용료 면제 여부는 시의 재량이며, 사용허가 취소처분도 정황에 비추어 적법
- '13.04.16 :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시)
- '13.04.18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승마협회)
- '13.05.21 : 부동산명도 청구의 소송 1심 시 승소
- '13.06.05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 고시
- '13.06.05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출(승마협회)
- '13.06.20 : 부동산명도 청구의 소송 항소(승마협회)
- '13.07.15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 '13.07.31 :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1심 기각
- '13.09.12 : 입회보증금 탈퇴회원(권기찬 외 23명) 손해배상 소송 시 승소
  - 원고 청구 일부기각(시 승소, 승마협회의 배상책임 있음)
- '13.09.27 : 입회보증금 탈퇴회원(권기찬 외 23명) 손해배상 소송 항소
- '13.11.12 :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2심 기각
- '14.01.17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2심 시 승소
- '14.02.06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승마협회)
- '14.02.28 : 부동산명도 청구의 소송 2심 시 승소('14.03.18 확정)
- '14.12.01 : 뚝섬승마훈련원 반환(승마협회 → 시)
- '15.01.14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3심 시 승소

### 붙임3. 2015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이월액	
		총계	21,093	5,860	4,060	11,173	
'15년 본예산	시설비	소계	10,063	2,065	1,302	6,779	
		서울대공원 풋살장(1)	120	119	1		99%
		중랑물재생센터 축구(1), 족구(3)	1,297	1,297	-		100%
		손기정 체육공원내 게이트볼(1)	96	92	4		96%
		성수근린공원내 농구장(1)	65	57	8		88%
		망원유수지 농구장(3)	200	33	23	144(사고)	16.5%
		광장동 체육공원내 체육시설	1,000	234	-	766	23.4%
		잠실운동장 체육시설(배드민턴, 족구)	120	118	2		98%
		북한산 인공암벽장	1,000	-	-	1,000	0%
		신내동 차량기지내 체육시설	1,136	-	-	1,136	0%
		강북, 노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1,559	68	1,181	310	4.4%
		강북구 종합스포츠타운건립타당성조사(체육정책과)	150	-	-	150	0%
		동북권역체육시설확충(체육정책과)	300	-	83	217(사고)	0%
		살곶이 야구장 조명시설	520	-	-	520	0%
		월곡동 운동장축구장 조성지원	1,000	-	-	1,000	0%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지원	1,100	30	-	1,070	2.7%
		목동유수지 테니스장 조성 지원	400	17	-	383	4.3%
	자 본 보 조	소계	1,533	1,533	-		
		축구,농구 조성 (양주시 공동)	743	743	-		100%
		시민체육활성화시범학교지원(신암중)	150	150	-		100%
야간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지원		300	300	-		100%	
장위석관 축진지구내 체육시설		200	200	-		100%	
유휴교실활용시민스포츠시범학교		140	140	-		100%	
'14년 이월예산	명 시 이 월	소계	7,329	94	2,758	4,394	
		서울대공원북들이동산 야구장조성	2,878	-	9	2,869(사고)	0%
		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체육정책과)	2,100	94	398	1,608(사고)	4.5%
		관악구 체육공원 조성	2,351	-	2,351	-	0%
	사 고 이 월	소계	2,168	2,168	-		
		용마산 폭포공원 인공암벽장 조성	1,000	1,000	-		100%
		살곶이 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760	760	-		100%
		해누리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318	318	-		100%
		관악구 제2구민운동장 확충	90	90	-		100%

## 붙임4. 2015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 1. 대행사업 계약, 관리 철저 촉구

#### 가. 현황 및 문제

2015년 관광체육국에서 서울시 출자회사인 (주)서울관광마케팅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23건이 있었습니다. 최종 낙찰된 계약금액의 총액은 168억 1천4백만 원입니다. 이는 (주)서울관광마케팅이 2015년 예산으로 잡아 놓은 사업비(인건비 불포함) 전체 지출액 150억 8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서울관광마케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체육국이 용역계약으로 지원하는 계약금액은 (주)서울관광마케팅 2015년 전체 예산액의 86.5%를 차지 할 정도이며 (주)서울관광마케팅은 자체사업 수익사업<sup>16)</sup>으로는 본인들의 인건비 30억 원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당해 용역계약 사업에 대해서 자체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는데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 적절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1인 전적 수의계약

관광체육국이 제출한 하단첨부표<sup>17)</sup>에 의하면 관광체육국이 (주)서울관광마케팅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23건 모두 1인 전적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그 중에서 20건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8호 사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6) 2014년 예산서 기준 5억4천만원, 2015년 예산서 기준 17억원

17) 하단첨부표 : 관광체육국이 결산검사장에 제출한 '2015년 관광체육국-(주)서울관광마케팅 용역계약 세부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관광체육국은 상기 ‘사목’에서 지칭하는 법률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라고 소명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관광진흥조례와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사무에 대해서 위탁이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예외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작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개정 지방계약 예규 및 유권해석 사례’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동 규정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외에 법령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미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관광마케팅을 제외한 모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을 적용하는 사례는 모두 특별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였습니다. 당장 관광체육국이 체결한 ‘2015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사업’의 경우만 해도 디자인재단이 실수로 8호 사목으로 제출했다가 재무과에서 반려되어 다시 계약 취지를 판단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으로 제출해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MICE와 관련한 사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면 실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을 근거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15건의 용역계약은 법령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15건 총 70억 원이 넘어가는

계약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해 문제를 저질렀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2) 예산과목 '민간위탁금'용역계약으로 체결하는 문제 시정해야

일반 공사용역물품 계약과 민간위탁은 규율하는 법률도 다르고 지침도 다르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조직과에서 해당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서 담당자의 실수로 예산코드 307-05 민간위탁금을 일반 공사용역물품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서와 결산서 상의 통계 검토에 오류를 낳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예산 편성과 심의 때에는 편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제출하고 향후 임의적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3) 자료 제출 미흡

관광체육국이 제출한 23건 용역계약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 부분 기재가 미흡했습니다. 23건 중에 10건이 실제 사유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통해 계약관련 공문을 직접 받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sup>18)</sup> .

### 나. 시정권고

첫째, 관광체육국은 앞으로 결산검사는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

18) 10건이 실제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으로 기재해서 제출하였고 이후 면담을 두 차례나 가지면서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나 관련하여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바로잡거나 소명한 바 없었음.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관광체육국은 2015년 (주)서울관광마케팅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절한 시행령 근거에 바탕해서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던 예산코드 기재를 본래 계약 취지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관광진흥조례와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검사와 지도에 대해서도 관광체육국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다. 조치방향(관광정책과)

첫째, 결산 관련 자료작성 및 제출에 오류가 없도록 자료제출 시 데이터 검증 등에 만전을 기하겠음

둘째, 우선 관광진흥전담기구와의 용역계약 체결 근거에 대해 타 시도 사례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재확인 절차를 거치겠음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기구의 지위와 대행사업 추진근거가 관광 관련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음

셋째, '16년부터 사업 성격상 대행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음

관광마케팅(주)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해 매년 연도 말 기준으로 검사와 지도를 시행하겠음

## 2. 발 빠른 계약 준비로 예산낭비 막아야

### 가. 현황 및 문제점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가 추진하는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은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서울관광 해외홍보 및 서울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서울 이미지와 선호도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 2014, 2015년 예산 현황>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4 예산 (A)	2015 예산 (B)	증감 (B-A)	$(B-A)*100/A$
3,100,000	4,340,000	1,240,000	40%

2015년 2월 5일부터 진행한 ‘삿포로 눈 축제 서울 홍보부스 운영 사업’(80,135천 원) 계약금액은 일본 대표축제인 제66회 삿포로 눈 축제에 서울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일본시민들에게 서울에 대한 관심 및 관광 욕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과는 삿포로 눈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서 홍보부스 운영권 협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늦은 대처로 인해 특정업체((주)네티피), KJ plus)에 기대어 홍보부스 운영권 협약을 진행하고 ‘삿포로 눈 축제 서울 홍보부스 운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었지만 시장이 방문하는 중요한 행사의 진행업체를 경쟁입찰이 아닌 부스 운영권을 확보한 특정업체(KJ plus)와 파트너십이 있는 국내업체((주)네티피)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나. 시정권고

앞으로 해외 홍보부스 부지 및 운영권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미리 대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부서 차원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시 출자회사인 (주)서울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 조치방향(관광사업과)

향후 유사한 해외 홍보부스 설치·운영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3. 예산편성의 부주의(동일사유로 반복 불용)

####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마케팅 및 관광홍보, MICE사업, 투자유치사업,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 관광 진흥 사업 등 서울의 도시마케팅과 관련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48.14%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주주이고 시티드림(주)를 포함한 16개 민간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금 액
서울특별시	2,000,000주	48.14%	10,000,000
시티드림(주)	600,000주	14.44%	3,000,000
기 타	1,554,286주	37.42%	7,771,430
합 계	4,154,286주	100.00%	20,771,430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대행사업 21건 및 민간위탁사업 1건을 서울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을 뿐 다른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2015년 관광체육국 예산 중 서울관광마케팅(주)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내용	예산액	결산액	비고
대행사업		17,017	16,269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1,800	1,760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코스 운영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130	1,021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코스 운영 (도보관광 코스 운영)	100	92	
관광정책과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사업	250	244	
관광정책과	도시 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사업	638	632	
관광정책과	2015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450	429	
관광사업과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3,846	3,655	
관광사업과	MICE 해외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2,317	2,204	
관광사업과	서울대표 MICE 육성	795	762	
관광사업과	MICE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	363	323	
관광사업과	MICE 민간협력지원 및 네트워크	420	409	
관광사업과	해외시장 관광교역전	460	441	
관광사업과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200	200	
관광사업과	해외수학(학생)여행 단체 지원	150	134	
관광사업과	의료관광 활성화	558	500	
관광사업과	서울 씬머세일	200	192	
관광사업과	한류관광 활성화	410	393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대표지도(안내서) 제작	843	824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다국어홈페이지 운영	1,100	1,083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모바일서비스 운영	900	868	
관광사업과	해외유명 여행서	87	83	
민간위탁		839	806	
관광정책과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명동, 인천공항, 김포공항)	839	806	
총 계		17,856	17,101	



아래에 정리한 바와 같이 회사가 설립된 2008년 이래 이익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순손실	2,089	1,831	732	1,492	1,976	850	499	219

2014년 및 2015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총이익보다 판매비 및 관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급여 및 부서운영비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의 반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12월 말 현재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140억원으로서 자본금 207억원 대비 70%에 달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자산운용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의 소중한 자원 100억 원이 투입되어 설립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정한 관리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기(2014년) 및 제8기(2015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제 8(당) 기말		제 7(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4,646,304,485		13,643,666,639
(1) 당좌자산		14,646,304,485		13,643,666,639
현금및현금성자산(주4)	7,519,477,075		4,857,634,180	
정부보조금(주11)	-		(5,535,940)	
단기금융상품(주5,6)	6,500,000,000		6,500,000,000	
매출채권(주7)	503,300,000		2,106,467,643	
미수금(주7)	124,986,393		181,468,650	
대손충당금	(122,247,094)		(181,078,501)	
미수수익	76,119,336		121,074,401	
선급비용	9,038,475		29,178,296	
당기법인세자산	35,630,300		34,457,910	
II. 비유동자산		585,296,186		605,110,332
(1) 투자자산(주8)		2,000,000		2,000,000
매도가능증권	2,000,000		2,000,000	
(2) 유형자산(주9)		73,007,648		90,115,361
차량운반구	22,622,370		22,622,370	
감가상각누계액	(22,622,370)		(22,622,370)	
집기비품	618,782,475		606,314,829	
감가상각누계액	(542,989,382)		(512,112,821)	
정부보조금(주11)	(2,785,445)		(4,086,647)	
(3) 무형자산(주10)		9,298,538		12,004,971
소프트웨어	9,298,538		12,004,971	
(4) 기타비유동자산		500,990,000		500,990,000
임차보증금	500,000,000		500,000,000	
기타보증금	990,000		990,000	
자 산 총 계		15,231,600,671		14,248,776,971
부 채				
I. 유동부채		2,979,321,421		2,026,392,800
미지급금(주20)	1,730,864,883		1,051,605,616	
미지급비용(주20)	391,331,107		92,526,120	
선수금(주7)	44,933,880		618,359,550	
예수금	812,191,551		263,901,514	
II. 비유동부채		1,415,725,387		1,166,638,899
퇴직급여충당부채(주13)	1,415,725,387		1,166,638,899	
부 채 총 계		4,395,046,808		3,193,031,699
자 본				
I. 자본금(주1,14)		20,771,430,000		20,771,430,000
보통주자본금	20,771,430,000		20,771,430,000	
II. 자본조정(주14)		(148,593,362)		(148,593,362)
주식할인발행차금	(148,593,362)		(148,593,362)	
III. 결손금(주15)		9,786,282,775		9,567,091,366
미처리결손금	(9,786,282,775)		(9,567,091,366)	
자 본 총 계		10,836,553,863		11,055,745,27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231,600,671		14,248,776,971
		1		1

## 제7기(2014년) 및 제8기(2015년)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I. 매출액(주7,18)		20,158,923,037		15,136,297,586
용역매출	20,158,923,037		15,136,297,586	
II. 매출원가(주17)		16,469,040,795		12,231,397,586
용역매출원가	16,469,040,795		12,231,397,586	
III. 매출총이익		3,689,882,242		2,904,900,000
IV. 판매비와관리비(주17)		4,520,117,430		3,855,970,159
급여	2,791,731,144		2,381,217,341	
퇴직급여	289,065,245		263,196,989	
복리후생비	235,683,038		210,029,327	
여비교통비	11,919,507		3,335,400	
차량유지비	9,348,583		10,306,253	
접대비	31,789,255		15,270,300	
교육훈련비	7,473,549		1,950,000	
통신비	27,441,505		26,893,593	
소모품비	17,599,916		18,102,566	
도서인쇄비	17,346,242		13,098,893	
세금과공과	114,693,571		112,606,113	
지급임차료	264,497,629		265,627,652	
지급수수료	383,579,641		280,811,047	
보험료	56,609,821		50,927,996	
운반비	434,600		417,000	
광고선전비	62,502,500		1,213,500	
부서운영비	109,959,581		107,134,184	
행사비	35,462,655		21,785,484	
경상개발비	18,498,656		21,136,288	
감가상각비	30,154,359		46,371,624	
무형자산상각비	4,326,433		4,538,609	
V. 영업손실		830,235,188		951,070,159
VI. 영업외수익		611,690,015		630,999,611
이자수익	190,984,509		243,086,061	
협찬금수익	298,981,818		368,372,728	
외환차익	3,057,353		13,061,267	
외화환산이익	197		13,507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58,831,407		-	
유형자산처분이익	-		1,281,818	
잡이익	59,834,731		5,184,230	
VII. 영업외비용		646,236		179,900,192
기타의대손상각비(주7)	-		122,247,094	
외환차손	410,028		740,801	
외화환산손실	-		1,847,506	
기부금	236,200		-	
잡손실	8		55,064,791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19,191,409		499,970,740
IX. 법인세비용(주16)		-		-
X. 당기순손실		219,191,409		499,970,74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자기관인 회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1) 결산서 작성 및 제출의무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19)에 따르면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독립된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 (2) 지도 및 감독 등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20)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sup>21)</sup>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습니다.

19)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1)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출장관리서로 당해 지도 및 점검절차를 대체하고 있고, 당해 지도 점검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관련 법률에 위배된 행정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체육국장과 재정기획관이 회사의 당연직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검사 및 보고 등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sup>22)</sup>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출자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단, 부칙(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회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

---

22)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제2조(적용 대상 등)

(중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4조(출자·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된 기관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50% 미만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 및 보고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4) 경영실적의 평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sup>23)</sup>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경영진단의 실시 등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sup>24)</sup>에 따르면 회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

23)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동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에 외부전문가의 경영진단을 개시하여 2016년 2월에 경영진단보고서<sup>25)</sup>를 수령하였습니다. 주무부서와 인터뷰에 따르면 2010년에도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경영진단 결과가 행정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실시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중한 재원이 투입된 회사에 대한 적절한 경영진단을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시기에 수행하지 못 함으로 인하여 끼치게 된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부재로 인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6) 경영공시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sup>26)</sup>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25)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컨설팅 서울관광마케팅(주)최종보고서, 2016.2, Kmac&Elloi Consortium

26)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결산검사일 현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기 5, 6, 7번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나. 시정권고

첫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원 100억원이 투입된 서울시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관리절차를 서울시가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련 규정의 정확한 해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도점검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보다는 행정의 실익을 고려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회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이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둘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권장 시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경영진단이 이루어진 만큼 외부전문가가 제시한 경영진단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조치방향(관광정책과)

첫째, 지방출자·출연법상 서울관광마케팅(주)에 대한 지도·점검은 강제 사항은 아니나, 관광진흥기관으로서의 서울관광마케팅(주)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서울시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음.

둘째,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서울관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구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음.

#### 4.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 준수 요망

##### 가. 현황 및 문제점

관광체육국에서는 서울월드컵 경기장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예산·결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년 도	예산액	변 경	전 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1	9,191			9,191	8,457	734
2012	8,686			8,686	8,171	516
2013	9,349			9,348	9,135	213
2014	11,384		475	10,908	10,082	826
2015	12,456	200		12,256	11,383	873

2011년 예산액이 9,191백만원이고 2012년 예산액이 505백만원 감소한 이후 2013년 663백만원, 2014년 2,035백만원, 2015년 1,072백만원 등 매년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 발생액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2011년 734백만원에서 2012년 516백만원으로 감소하고 2013년에는 213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점차 불용액이 축소되다가 2014년에는 474백만원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26백만원으로 급증하고 2015년에도 서남권돔구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백만원을 예산변경사용한 후에도 87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474백만원을 전용하고도 불용액이 826백만원 발생하였는데 2015년 예산을 1,072백만원 증액한 12,456백만원 편성하고 200백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에도 872백만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월드컵 경기장 위탁운영사업에 매년 예산을 증액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되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중 일부를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시정권고

동일 사업에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함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정작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 상시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시정을 권고합니다.

#### 다. 조치방향(체육정책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낙찰차액 및 자체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액 발생

- 2014년 826백만원
- 2015년 873백만원

2014년과 2015년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비 주요 증가 사유는 시와 공단과의 경영성과계약에 따른 성과재원 증액 편성

- 2014년 13억 원
- 2015년 22억 원

2016년부터 성과재원 전액 삭감으로 전년 대비 20억이 감액되어 예산 편성되었음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와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음

## 5. 민간위탁사업 사후관리절차 준수 및 보완

### 가. 현황 및 문제점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sup>27)</sup>.

민간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사개념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단순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용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사후관리 제도에는 회계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가 있습니다.

#### (1) 지도·점검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sup>28)</sup>.

지도·점검 매년 1회 실시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아래 사업은 지도·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지연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7)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2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

〈관광체육국〉

순번	사업명	사업비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시일	비 고
3	서울시장애인 체육회 육성	900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미실시	매월 서류정산을 통해 약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 지도점검은 '16.4월 실시예정
4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3,582	서울시체육회	미실시	매월 서류정산을 통해 약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 지도점검은 '16.4월 실시예정
7	서남권돔구장 운영	2,650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미실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서 위탁기간이 짧아('15.9.7 체결) 지도점검 미실시

상기 지적대상 사업들을 살펴보면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실시한 기간이 2  
개월에 불과한 사업도 있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그 실효성 확보에 의  
문이 드는 사업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조문  
에서 매 년이라는 의미는 역년(曆年, calendar year)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른 차별 적용은 고려할  
수 없는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위탁사업 사후관리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지도·점검 시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점검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정의 준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제도 시행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제한된 행정자원의 낭비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개시가 늦어져서 지도점검대상기간이 짧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 조치방향(체육정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통 연말에 실시되는데 정산 및 차년도 예산편성 등 일정이 겹쳐 실질적인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기를

차년도 예산편성 추계작업 전(9월 이전)으로 정례화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 하겠음.